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 보도참고자료 | 배 포 | 2021. 3. 25.(목) |
|---|---|---|---|
| | | 담 당 과 |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|
| 식품의약품안전처 | | 과 장 | 오금순 (☎043-719-2501) |
| | | 연 구 관 | 조태용 (☎043-719-2505) |

# 국제기준에 맞도록 향료 분류체계 개편

##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향료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같이 정비하여 다양한 향료가 제조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 합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은 ▲향료 분류체계 개편 ▲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▲정제(알약 형태)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▲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.

○ 이번 개정으로 향료 분류체계에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, 향료의 희석,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하여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(Oak moss, Santa herb) 2종과 향료물질(Cassyrane 등) 58종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하였습니다.

○ 한편,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'제피'(껍질)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, '제피' 부분만을 따로 구분하여 검사하기 어려워 정제 전체를 검사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·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·자료> 법령정보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첨부>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(안) 주요내용

## 첨부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(안) 주요내용

### 1. 향료 관리체계 개선

| 품 목 명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**향료** | ○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 등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“향료”로 묶어 분류하고, 다양한 제품의 제조 및 품질 보존을 위한 희석제 종류 개선 |

### 2. 향료물질 추가 등재 등 정비

| 품 목 명 | 개 정 내 용 |
|---|---|
| **천연향료물질** | ○ 국제적으로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Oak moss, Santa herb를 천연향료 기원물질에 추가 등재 |
| **합성향료물질** | ○ 국제적으로 합성향료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Cassyrane 등 58종을 추가 등재 |

### 3. 건강기능식품 정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의 사용량 기준 명확화

| 품 목 명 | 개 정 내 용 |
|---|---|
| **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** | ○ 건강기능식품 정제 제품에 대하여 식용색소 사용량을 최종제품 전체 중량으로 적용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|

### 4. 시험법 개선

| 품 목 명 | 개 정 내 용 |
|---|---|
| **글리세린 등 2개 품목** | ○ 성분규격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 및 시험절차 등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 |
| **일반시험법 중 웅고점측정법** | |